

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. 2. 2 선고 2020가단107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소송대리인 C

변론 종결 2021. 1. 19.

판결 선고 2021. 2. 2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38,919,6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38,919,6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(채무자

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, 제396조). 파산절차가 채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변제하기 위한 집단적·포괄적 채무처리절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.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총 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,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(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7다265129 판결 참조).

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부친인 C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자로서 C이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금전을 피고에게 증여하거나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받는 등 사해행위를 하였다면서,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다. 그런데 갑 제5호증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채무자 C에 대한 파산선고가 2019. 9. 2. 내려진 사실(울산지방법원 2018하단677)을 인정할 수 있고, 파산채권자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채권자취소의 소가 그 이후인 2020. 5. 25.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, 이 사건 채권자취소의 소는 C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.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강민기